

10~12세기 고려의 渤海難民 수용과 주변국 同化政策*

전 영 준*

국문요약

고려는 건국과 동시에 불안한 동북아시아의 정세에 직면하여 주변 민족의 고려 편입을 유도하기 위한 諸정책을 시행하였다. 당시 고려를 둘러싼 인접국가의 내부적 혼란과 새롭게 등장하는 북방민족의 흥기는 발해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이처럼 10세기 전후의 동북아시아의 혼란한 정세는 고려의 대내외정책을 치밀하게 수립해야 할 당면 과제였다. 이에 따라 고려는 대내적 안정을 위한 중앙집권 강화 정책을 수립하면서도 정복전쟁의 수행에 필요한 인적 자원의 확충을 위해 북방 지역의 이민족을 적극 수용하고자 하였다.

고려는 왕권의 안정을 위한 제도와 팔관회를 활용한 대외적 신인도의 확대를 피하여 북방 이민족에 대한 羈縻州의 설치를 통하여 투화를 적극 유도하였다. 또한 우산국과 탐라국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정책도 수립하였다. 특히 탐라국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동북아시아의 조공-책봉관계를 활용하는 羈縻支配 방식을 채택하여 적극 시행하였다.

고려의 난민과 이민족에 대한 다양한 동화정책의 시행은 고려 전기 발해의 세자 大光顯과 그 難民을 비롯한 여진 및 북방 민족의 내투과정에서 전개되었다. 아울러 탐라에 대한 기미지배와 지방 정부 편입으로 동북아시아에서 고려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갔다.

고려 전시기에 걸쳐 끊임없이 투화해온 이민족에 대한 賜姓名, 賜爵 등의 정치적 배려와 편호 및 투화전 지급 등의 사회경제적 처우의 개선은 고려인의 정체성으로 동화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C2A02083627). 아울러 이 연구는 2020년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쿵다로 푸는 난민의 출현과 인식>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고를 읽고 보태었음을 밝힌다. 함께 고민해주신 학술대회 토론자와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제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이민족에 대한 고려의 적극적인 동화정책은 동북아시아에서 고려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일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 難民, 渤海遺民, 靺鞨州, 탐라국, 靺鞨支配, 동화정책

I. 머리말

고려는 건국 이후 주변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전부터 유지되었던 중국 중심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세계관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것은 5대 10국과의 관계를 비롯하여 시기별로 거란·요, 말갈·여진·금 및 송·몽골·원과의 외교와 이슬람 국가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다원적 천하관을 형성하였다. 특히 이들 국가들은 문화 및 경제 분야에서 고려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교류의 기본 속성인 동화와 융합에 주목할 때 인적 교류를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의 ‘移動人’들에 의한 문화 변이나 사회 변화 양상도 확인할 수 있다(전영준, 2019: 81-82)는 것이 고려 전기 천하관과 맥락을 같이 하였다.

고려의 대외정책은 국제적인 축제 성격의 팔관회를 활용한 대외적 신인도의 확대와 賜姓, 賜爵, 編戶制, 投化田을 적극 활용한 이민족 투화 유도에 정치력을 집중하였다(전영준, 2012a: 405-432). 이것은 나말여초기를 거치면서 감소한 인구의 보충과 당시 동북아시아의 외교적 역학관계에 따른 다원적 세계관에 영향을 받았다. 후삼국 시기의 크고 작은 전투와 탈점으로 인한 난민의 발생은 고려가 통일한 후에도 국가 경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때문에 고려는 최우선의 국가정책으로 인구 증대에 집중하였고, 전쟁으로 발생한 발해 難民을 비롯한 북방의 異民族을 적극 수용하고 고려의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는데 정책적 목표를 두었다.

그래서 고려는 외교적으로 거란과의 유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여진인의 내투를 유도하고 발해 유민들을 적극 수용하였으며,¹⁾ 탐라를 비롯한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1) 遺民은 정권이 분열되거나 전쟁이나 기근 등과 같은 사회적인 혼란이 발생한 시기에 대규모로 나타나는 타율적 徙民 즉, 전쟁으로 발생한 현대적 난민의 개념을 전근대사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流民의 경우에도 이들의 이동은 각지의 문화 교류가 일어나고 낙후된 지역의 諸분야에서 발전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遺民·難民과 같이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김진선, 2020: 14-18; 김치완, 2020: 41-43 참조).

역점을 두었다. 즉, 북방의 양계에 인접한 이민족의 투화를 유도하는 정책 배려와 생활 근거를 마련하는 경제적인 처우 개선은 북방 이민족이 고려에 동화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그리하여 고려는 民戶에 충당될 이민족에게 賜姓名이나 賜爵, 投化田 지급 등의 정책적 수혜를 통해 이들을 적극 수용하였다. 또한 팔관회에 보이는 대외 인식에서도 고려의 다원적 천하관은 화이론적 천하관에 입각한 중국 중심의 세계와는 다른 자주적이고 개방적인 천하관으로 고려·송·요·금으로 이어지는 북방왕조가 삼각구도로 공존하며 대립하였던 고려 중기까지의 주요 정책이었다(노명호, 1997 참조).

팔관회의 조하의식에서도 고려는 주변국과의 국제관계를 적극 활용하여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대외정책 전략을 유지하고 있었다. 주변국의 혼란한 정세와 정치적 변동을 십분 활용하는 고도의 전략적 접근이었던 팔관회는 고려 내부의 사정에 따라 다소 축소되었지만, 송상이나 대식국 및 여진, 탐라 등의 진헌의례와 조공무역을 강화함으로써 동북아시아 세력을 조율하는 정치적 효과를 거두고 있었다(추명엽, 2002: 23-35; 전영준, 2010).

여기에 더하여 고려전기 발해의 세자 大光顯과 그 난민을 비롯한 여진 및 이민족의 來投, 元 복속으로 고려 정부와 유리된 삼별초의 海島入保 저항 등은 정복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전형적인 전쟁난민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충렬왕 때 禿魯花였던 金深²⁾의 딸이 원나라 인종의 황후로 봉해지기도 한 사실³⁾과 奇皇后 외의 貢女로 끌려갔던 원나라 황실의 고려 여인의 난민 유형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그리고 원나라의 멸망과정에서 제주도 離宮을 건설하고자 파견되었던 元 匠人들의 고려 歸附 사실 및 梁나라의 유력자들이 제주로 유배된 기록 등은 정치 난민의 개념으로 이해하여도 타당할 것이다.

한국 고대사의 경우에도 전쟁이나 지방 분립으로 발생한 유민들을 난민의 개념에서 직접 다루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이주의 動因에 따라 ‘자발적 移住 난민’과 ‘타율적·강제적 徙民 난민’으로 정의한 연구가 있어 주목된다(장창은, 2020: 13-64). 이 연구에서는 한국 고대의 난민을 유형화하여 자발적 이주 난민의 유형으로 ①정치난민 ②종교난민 ③경제난민 ④유민난민 ⑤기타난민으로 세분하였고, 타율적 사민 난민 유형으로는 ①외교난

2) 김심의 부친은 知僉議府事 金周鼎이며 伯父는 삼별초의 제주도 진공작전을 방어하기 위해 官軍으로 파견됐던 영광부사 金須이다. 김수의 부인은 濟州高氏로 102세까지 살았다(李齊賢, 「沃溝郡大夫人高氏墓誌銘 並書」).

3) 『高麗史』 卷104 열전17 金周鼎傳 金深. “深, 忠烈朝, 以禿魯花入元, 後爲郎將. 又以弓箭陪如元, 累遷密直副使, 襲父萬戶職, 尋加同知. 嘗奉表如元, 請忠宣還國, 忠宣特授叅理, 教曰, ‘宰相洪子藩·崔有滄·柳清臣·金深·金利用等, 圖安社稷, 重義輕身, 偕赴朝廷, 論列利害, 爲孤請還, 其功殊異, 宜特敘用.’ 陸贊成事. 元授高麗都元帥, 以其女達麻實里得幸於帝, 故有是拜. 女後封皇后, 深自私第入摠部開宣, 以行省所在國王右丞相水精鈇鉞等儀仗, 陳於馬前. 開宣畢, 三官五軍入庭羅拜, 識者以爲僭禮. 俄遷密直使, 封化平君.”; 『高麗史』 卷35 世家35 忠肅王 15年 4月, “戊戌 郎將李自成還自元, 言, ‘帝封我化平君金深女達麻實里爲皇后.’ 先是, 深女爲仁宗皇帝偏妃.”

민 ②전쟁난민 ③유민난민 ④기타난민으로 나누어 발생 배경에 따라 개념화하였다는 점에서 난민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고려 전기에 지속되었던 난민의 이주 또는 투화, 기미주의 설치, 진현의례, 기미 지배 등과 같이 주변 민족에 대한 포섭정책을 검토하여 고려가 북방 난민의 수용으로 얻고자 하였던 국가정체성의 의미와 탐라국 등 주변국에 시행하였던 동화정책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II. 고려전기 발해 難民 발생과 수용

고려는 건국과 동시에 불안한 동북아시아의 정세에 직면하여 주변 민족의 고려 편입을 유도하기 위한 諸정책을 시행하였다. 당시 고려를 둘러싼 인접국가의 내부적 혼란과 새롭게 등장하는 북방민족은 발해의 멸망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등 10세기 전후의 혼란한 정세는 고려가 헤쳐 나가야 할 당면 과제였다. 고려는 대내적 안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면서도 정복전쟁의 수행에 필요한 인적 자원의 확충을 위해 북방 지역의 이민족 수용으로 난제를 극복하고자 하였다(전영준, 2012a: 407-410).

고려 태조 王建은 918년에 추대 형식으로 국왕에 즉위하였다. 이후 고려는 신라 하대의 혼란과 후삼국 분열 상황을 극복하고 통일왕조로 성장하였다. 그 과정에는 호족으로 할거하였던 주변의 세력들을 통합하는 과정을 수행하였으며 936년 9월 고려군이 천안부에서 3개월간의 준비를 마치고 후백제와의 一利川 戰鬪가 시작되었다. 통일을 위한 마지막 전투에 참가한 고려군은 87,500명이었고 편제는 3군과 원병을 갖추고 있었다(김명진, 2014: 203-205). 왕건을 제외한 지휘관으로는 甄萱을 포함하여 38명이다. 4개 부대의 병력은 馬軍 4만 명, 步軍 2만 3천명, 勁騎 9천 5백 명, 그리고 기병 3백을 포함한 援兵 1만 5천 명으로 총수는 8만 7천 5백에 이르렀다.⁴⁾

이중 勁騎 9,500명은 북방의 여러 번족인 黑水, 達姑, 鐵勒 등지에서 온 병사들이었다.

4) 『高麗史』 卷2 世家2, 태조 19년 9월, “甲午 隔一利川而陣, 王與甄萱觀兵. 以萱及大相堅權·述希·皇甫金山, 元尹康柔英等, 領馬軍一萬, 支天軍大將軍元尹能達·奇言·韓順明·昕岳, 正朝英直·廣世等, 領步軍一萬爲左綱. 大相金鐵·洪儒·朴守卿, 元甫連珠·元尹萱良等, 領馬軍一萬, 補天軍大將軍元尹三順·俊良, 正朝英儒·吉康忠·昕繼等, 領步軍一萬, 爲右綱. 溟州大匡王順式·大相兢俊·王廉·王义, 元甫仁一等, 領馬軍二萬, 大相庾黔弼, 元尹官茂·官憲等, 領黑水·達姑·鐵勒諸蕃勁騎九千五百, 祐天軍大將軍元尹貞順, 正朝哀珍等, 領步軍一千, 天武軍大將軍元尹宗熙, 正朝見萱等, 領步軍一千, 杆天軍大將軍金克宗, 元甫助杆等, 領步軍一千, 爲中軍. 又以大將軍大相公萱, 元尹能弼, 將軍王舍允等, 領騎兵三百, 諸城軍一萬四千七百, 爲三軍援兵. 鼓行而前, 忽有白雲, 狀如劍戟, 起我師上, 向賊陣行.”

경기는 강한 기병으로 소수의 정예부대라는 특징을 보이지만, 926년 발해 멸망 후 강력한 통제력이 미치지 못하여 북방의 여러 지역에 할거하는 北蕃 등으로 표현되는 諸蕃勁騎였다(김명진, 2014: 156-164). 이러한 소규모의 제번경기들이 고려가 수행하고 있는 일리천 전투에 무려 9,500명의 대규모로 참가한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었다(김명진, 2014: 165-171).⁵⁾ 이와 더불어 일리천 전투에 참여한 총 병력에는 934년(태조 17) 7월에 정치적 망명을 택한 발해 세자 大光顯과 수만의 유민 중에는 발해군이 포함되었다는 점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일리천 전투 이후 고려의 중앙군 수가 4만 5천이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대광현이 이끄는 수만의 유민들이 고려에 유입된 문제는 태조로서도 쉽게 처리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이재범, 2003: 725). 또한 발해 유민의 고려 귀부가 925년부터 시작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한다면 고려 내의 발해 유민은 상당하였을 것이다(박옥걸, 1996: 101-102).⁶⁾

발해의 멸망은 거란과의 충돌이 발생한 910년을 전후한 시기에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양국의 관계는 919년까지 발해의 사신이 거란에 파견되는 등⁷⁾의 안정세와 달리 발해의 서쪽 국경지대 일부가 이 무렵 거란의 세력권에 들게 되자 발해 내부의 위기감도 점차 고조되어 갔다(박옥걸, 1996: 91). 이후 거란의 급속한 확장은 924년 거란의 遼州에 徙置된 발해인의 반란이 발단이 되어 阿保機의 공격을 받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하였다.

한편, 발해가 멸망하는 926년 1월 이전부터 발해인의 고려 來投가 있었는데, 대광현이 망명을 선택하던 934년까지의 8년 공백은 발해 왕족을 중심으로 하는 부흥운동의 영향으로 대광현의 선택이 늦어졌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발해유민에 의해 전개된 부흥운동은 발해의 故土에서 일어난 後渤海와 定安國, 扶餘府 燕頗의 봉기 등이며, 거란의 심장부인 東京, 上京을 중심으로 강제 徙民되었던 渤海難民들에 의해 전개되었던 두 갈래의 특징을 보인다(이종명, 1968: 206-208). 발해인의 부흥운동은 고려 내투와 관련이 있는데, 부흥운동이 실패할 때마다 많은 발해인들이 거란의 추격을 피해 왔으므로 발해인의 내투시기가 부흥운동의 실패와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발해의 부흥운동에 지원하지 않았던 고려로의 내투는 그들이 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일종의

5) 일리천 전투에 참여한 제번경기가 상대급부로 받은 것은 고려가 더 이상 마혈탄 이복으로 부상하지 않는 것이며, 실제로 왕건 치세에는 고려군이 더 이상 부상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보아, 제번경기가 고려로 약속받은 전형적인 ‘重幣卑辭’로 파악하고 있어서 참고할 만하다.

6) 박옥걸은 당시 고려의 인구를 『송사』 고려전에 의거하여 210만 명으로 산정할 경우 발해유민은 전체 고려 인구의 2.4%에서 6%까지 이른다고 하였다.

7) 『遼史』 卷1, 本紀, 神冊 3년 2월 癸亥, “晉吳越渤海高麗會鶻阻下黨項及幽鎮魏潞等州 各遣使來貢”

민족적 유대감에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였다(박옥걸, 1996: 95).⁸⁾ 멸망 수개월 전에 시작된 발해인의 고려 내투와 망명은 1117년(예종 12)까지 이어질 정도로 발해인의 저항이 계속되었다. 925년(태조 8)부터 시작된 발해인의 고려 망명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고려로 망명한 발해 難民⁹⁾

| 서기년 | 월 | 일 | 관련 내용 |
|--------------|----|----|--|
| 925년(태조 8) | 9 | 6 | 발해장군 申德 등 500인 내투 |
| | 9 | 10 | 渤海禮部卿 大和鈞·均老, 司政 大元鈞, 工部卿 大福暮, 左右衛將軍 大審理 등이 民 100호와 내투 |
| | 12 | 29 | 渤海左首衛小將 冒豆干, 檢校開國男 朴漁 등 民 1천호를 이끌고 내투 |
| 927년(태조 10) | 3 | 3 | 渤海工部卿 吳興 등 50인, 僧 載雄 등 60인 내투 |
| 928년(태조 11) | 3 | 2 | 渤海人 金神 등 60호 내투 |
| | 7 | 8 | 渤海人 大儒範 民을 이끌고 내투 |
| | 9 | 26 | 渤海人 隱繼宗 등이 내부하여 天德殿에 3번 절을 하니 사람들이 실례라고 하자 大相 肅弘이 망한 나라 사람은 3번 절하는 것이 옛 법이라고 함 |
| 929년(태조 12) | 6 | 23 | 渤海人 洪見 등이 배 20척에 사람들을 싣고 내투 |
| | 9 | 10 | 渤海 正近 등 300여 인이 내투 |
| 934년(태조 17) | 7 | 미상 | 渤海國 世子 大光顯이 무리 수 만을 이끌고 내투, 王繼라는 이름을 주고 왕실 족보에 등록하고, 특별히 元甫를 주어 白州를 지키게 하였으며 그들의 祭祀를 받들게 함. 그의 僚佐에게도 爵位를, 군사에게는 田宅을 차등 있게 내림 |
| | 12 | 미상 | 渤海 陳林 등 160인 내투 |
| 938년(태조 21) | 미상 | 미상 | 渤海人 朴昇이 3천 여 호로 내투 |
| 979년(경종 4) | 미상 | 미상 | 발해인 수만 내투 |
| 1018년(현종 9) | 1 | 2 | 정안국의 骨須가 도망쳐 옴 |
| 1030년(현종 21) | 9 | 18 | 興遼國의 郢州刺史 李匡祿 체류하고 돌아가지 않음 |
| | 10 | 미상 | 契丹의 奚哥와 渤海의 백성 500여 인이 내투, 江南 州郡에 살게 함 |

8) 이와 관련하여 고려 태조가 거란과의 긴밀한 외교관계를 유지하면서 실리외교를 지향했던 것은 고려 초기의 정권 안정과 관계가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대응했던 태조의 외교정책과 발해관을 자칫 의리 일변도로 해석하는 경향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하였다(이재범, 2003: 719).

9) 고려에 망명한 발해 난민은 기존의 연구 성과에서 밝혀진 내용들을 토대로 재정리하였다(이종명, 1968: 202-204의 <귀화발해인 대표자 명단>에서는 개개인을 포함하여 모두 40사례로 정리되어 있다. 박옥걸, 1996: 96-98의 <來投 事例>; 이재범, 2003: 724의 <고려에 내부한 발해유민>에는 태조부터 경종 4년까지만 추려 실려 있다).

| | | | |
|--------------|----|----|--|
| 1031년(현종 22) | 3 | 미상 | 契丹과 渤海의 백성 40여 인 내투 |
| | 7 | 22 | 渤海 監門軍의 大道와 行郎 등 14인 내투 |
| | | 24 | 渤海의 諸軍判官 高眞祥과 孔目 王光祿이 거란에서 牒文을 가지고 내투 |
| 1032년(덕종 元) | 1 | 26 | 渤海의 沙志와 明童 등 29인 내투 |
| | 2 | 7 | 渤海의 史通 등 17인 내투 |
| | 5 | 7 | 渤海의 薩五德 등 15인 내투 |
| | 6 | 12 | 渤海의 弓音若己 등 12인 내투 |
| | | 16 | 渤海의 所乙史 등 17인 내투 |
| | 7 | 27 | 渤海의 高城 등 20인 내투 |
| | 10 | 8 | 渤海의 押司官 李南松 등 10인이 도망쳐 옴 |
| 1033년(덕종 2) | 4 | 3 | 渤海의 首乙分 등 18인 내투 |
| | | 23 | 渤海의 可守 등 3인 내투 |
| | 5 | 29 | 渤海의 監門隊正 寄叱火 등 19인 내투 |
| | 6 | 8 | 渤海의 先宋 등 7인 내투 |
| | 12 | 16 | 渤海의 寄叱火 등 11인 내투하자 남쪽 땅에 거주하게 함 |
| 1050년(문종 4) | 4 | 17 | 渤海 開好 등 내투 |
| 1116년(예종 11) | 12 | 미상 | 이달에 契丹人 33인, 漢人 52인, 奚人 155인, 熟女眞人 15인, 渤海人 44인이 옴 |
| 1117년(예종 12) | 1 | 3 | 渤海人 52인, 奚人 89인, 漢人인 6인, 契丹人 18인, 熟女眞人 8인이 遼에서 내투 |

<표 1>의 사례는 태조 때부터 예종대까지의 투화 또는 내투 사실이지만, 당시 동북아시아의 정세와 맞물린 결과이자 중국 대륙의 잦은 왕조 교체와 북방 민족의 발흥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의 현실을 회피하려 했던¹⁰⁾ 정치적 망명의 성격이 더욱 강하게 보인다(전영준, 2012a: 407-432). 이처럼 고려는 국초부터 발해유민의 적극적인 유치 정책을¹¹⁾

10) 『高麗史』 卷2 「世家」2 광종 9년, “夏五月始置科擧 命翰林學士雙冀取進士. 丙申 御威鳳樓放枋賜崔暹等及第” 고려의 한인 지식층에 대한 인식 자체는 이전의 왕조보다 더욱 확대되었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광종의 개혁정치를 체계적으로 이끌어냄으로써 고려 초기의 왕권 강화와 중앙집권화에 상당한 기여가 있었다.

11) 태조 8년만 보더라도 발해인의 귀화가 잦았다. 『高麗史』 卷1 「世家」1 태조 8년 9월, “丙申 渤海將軍申德等 五百人來投”; 9월, “庚子 渤海禮部卿大和鈞均老 司政大元鈞 工部卿大福暮 左右衛將軍大審理等 率民一百戶來附”; 12월, “戊子 渤海左首衛小將冒豆干 檢校開國男朴漁等 率民一千戶來附”

상당 기간 유지하였는데, 934년(태조 17) 발해국 세자인 大光顯의 귀화로 절정을 이루었다.¹²⁾ 그런데 <표 1>에 따르면 대광현의 망명이 발해 멸망 직후가 아니라 몇 년의 시차를 두고 표현되고 있다. 대광현의 망명시기(임상선, 1999: 123-128)에 대한 시차가 확인되는 『高麗史節要』의 사료를 검토해보면, 대광현은 태조 8년에 고려로 망명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① 12월.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켰다. 발해는 본래 粟末靺鞨이었다. 唐 則天武后 때에 고구려 사람인 大祚榮이 요동으로 달아나 점유하였다. 당 睿宗이 발해군왕으로 봉하니, 이로 인하여 스스로를 渤海國이라 부르고, 扶餘·肅慎 등 10여 나라를 병합하였다. 문자와 禮樂, 官府의 제도가 있었으며, 5京 15府 62州에 영토는 사방 5,000여 리이며, 인구는 수십만이었다. 우리의 경계와 인접해 있었으며, 거란과는 대대로 원수지간이었다. 거란의 군주가 (군사를) 크게 일으켜 발해를 공격하여, 忽汗城을 포위한 채 멸망시키고, 東丹國으로 바꾸었다. 그 세자 大光顯과 장군 申德·예부경 大和鈞·均老司政 大元鈞·공부경 大福馨·좌우위장군 大審理·소장 冒豆干·검교 開國男 朴漁·공부경 吳興 등 그 남은 무리들을 이끌고 전후로 도망쳐 온 자들이 수만호였다. 왕이 그들을 매우 후하게 대우하여, 대광현에게 ‘王繼’라는 성과 이름을 내려주면서 그를 왕실의 籍에 붙이고, (자기 조상의) 제사를 받들도록 허락하였다. 보좌하는 신료들에게도 모두 爵位를 내려주었다.¹³⁾

사료의 내용을 확인해보면 <표 1>의 『고려사』에 보이는 925년에 내투한 이들과 934년의 기록이 나누어져 있는데, 『고려사절요』에서는 하나의 기사로 표현되어 있다. 이들 기록을 종합하면 대광현의 망명은 발해의 멸망과 더불어 바로 이루어졌으나 고려로부터 각종 우대 조치가 취해진 것은 934년으로 보는 경우로, 신라 왕 金傅의 경우처럼 수년이 지난 후 새로운 처분을 받는 사실에 연계하는 것이다. 비록 양자 간의 내용이 다르다 하더라도 내용이 동일하므로 대광현에 대한 처우가 내려진 934년 7월 기사에 925년의 망명 사실까지 묶어 서술하는 과정의 혼선으로 확인된다(이효형, 2007: 125-132).

그런데 앞의 <표 1>은 고려로 망명한 발해 난민만을 사례로 하였지만, 북방의 거란이

12) 『高麗史』 卷2 「世家」2 태조 17년 7월, “渤海國世子大光顯 率衆數萬來投 賜姓名王繼 附之宗籍 特授元甫 守白州以奉其祀. 賜僚佐爵軍士田宅有差.”

13) 『高麗史節要』 卷1, 태조 8년 12월. “十二月. 契丹滅渤海. 渤海本粟末靺鞨也. 唐武后時, 高句麗人大祚榮走保遼東. 睿宗封爲渤海郡王, 因自稱渤海國, 併有扶餘肅慎等十餘國. 有文字禮樂官府制度五京十五府六十二州, 地方五千餘里, 衆數十萬. 隣于我境, 而與契丹世讎, 契丹主大學攻渤海, 圍忽汗城, 滅之, 改爲東丹國. 其世子大光顯及將軍申德禮部卿大和鈞均老司政大元鈞工部卿大福馨左右衛將軍大審理小將冒豆干檢校開國男朴漁工部卿吳興等率其餘衆, 前後來奔者數萬戶. 王待之甚厚, 賜光顯姓名王繼, 附之宗籍, 使奉其祀. 僚佐, 皆賜爵.”

나 여진 등과 같은 경계에 놓여 있던 이민족의 내투도 상당하였다(한항도, 2014: 64-70).¹⁴⁾ 앞에서 살펴본 일리천 전투에 참여한 諸蕃勁騎가 내투인은 아니었지만(추명엽, 2002: 35-40), 북방의 여러 곳에서 타국인 고려의 전투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은 고려의 북방경계에 대한 운영이 고도화된 접근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¹⁵⁾

이에 따라 고려는 주변의 이민족 入境과 관련하여 官爵을 수여하거나, 賜姓 또는 編戶 제도를 활용하여 고려 백성으로 적극 유치함으로써 인구의 증가를 꾀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노력이 지속되었고(전영준, 2012b: 27-47), 거란·여진의 북방민족의 歸附도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고려와 거란의 접촉은 건국 초기부터 상당히 우호적이었으나, 발해가 거란에 의해 멸망하면서부터 양국관계는 악화되었다(한규철, 1986, 24). 더구나 태조가 후대에 남긴 『訓要十條』에는 거란에 대한 배제정책이 수록될 정도로 발해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규정하였던 사실은 적대국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993년(성종 12) 10월에 있었던 양국 간의 군사적 충돌은 태조 이후 계속되었던 고려 정부의 북진정책에 대한 거란의 견제였으며, 이 기간 동안 거란인의 投化가 없었던 것도 고려의 거란에 대한 적대적 정책 유지에 그 원인이 있었다(남인국, 1986: 90). 그러나 현종 대에 이르러서 거란인의 來投가 증가하였는데, 이 시기는 북방지역을 제압한 遼의 강력한 통제로 발생한 투화였고, 거란인의 고려 투화는 女眞에 의해 멸망될 때까지 계속 이어졌다.¹⁶⁾

고려 초기부터 다양한 종족이 來投內附하여 고려 경내외에 거주하였다. 고려 태조대부터 의종대까지 漢系, 여진계, 거란계, 발해유민 등 투화인이 총 185회, 168,499명이라는 연구(박옥걸, 1996: 59)에 따르면 『송사』 「고려조」에서 언급된 고려 인구 남녀 210만 명¹⁷⁾과 비교해 상당한 정도로 다양한 종족과 이국인이 들어와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다. 異種族異國人之 거주는 영구 거주와 한시적 거주로 나뉜다. 영구 거주는 투화의 형식을 통해 이루어졌고 한시적 거주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관리되었으며 한시적 거주에서 투화로 이어지기도 하였다(이진한, 2015 참조). 한시적 거주 대상으로 가장 많았던 대상

14) 11세기에 내투하였던 將軍號를 지닌 이들은 232명이고 개인 또는 무리로 내투하는 경우가 있었다. 당시의 기미주 설치와 관련한 북방 민간인의 수도 발해인 못지않게 상당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기미주의 운영으로 북방영토를 확장하였다는 사실은 고려의 북방정책에 대한 전략적 변화를 생각할 수 있게 한다.

15) 『高麗史』 卷2, 世家2, 태조 2년. “大相庾黔弼 元尹 官茂 官憲等 領黑水達姑鐵勒 諸蕃勁騎九千五百.”

16) 고려에 투화한 거란인의 동인은 끊임없이 추진된 정복전쟁에서의 도피와 이로 인한 경제적 궁핍을 해소하는 데 있었다(남인국, 1986: 91).

17) 고려 인구 210만은 송의 입장에서 낮추어 잡은 것으로 보고 『고려도경』의 60만 병사 수 기록을 근거로 해서 대략 250만 이상, 300만 내외로 이해한 연구가 있어 참고 된다. 당시의 인구 수를 근거로 할 때 17만에 이르는 투화인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의미 있는 수치이다(박용운, 1996).

은 宋商, 동서여진인, 일본인 등이었다(추명엽, 2018: 113-114)

아울러 고려에 망명한 왕족과 백성을 모두 포함한 십 수만의 내투인들은 고려 초기부터 인구의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과 잘 맞물린다는 점에서 내투 귀화인들에 대한 처우도 상당하였을 것이다. 賜姓名이나 賜爵, 관직 임명 등과 같은 조치¹⁸⁾들을 통해 발해인들이 고려에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것 등은 고려정부의 개방적 세계관과 직접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노명호, 1997; 전영준, 2012c: 30-33; 추명엽, 2018: 109-145).

한편, 고려의 발해 계승의식은 고려가 국가통치 차원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낸 경우는 없다. 여기에는 고려의 입장에서 볼 때 영토·문화·지리·전통의 면에서 발해보다는 고구려를 계승국가로 내세우는 것이 유리하다는 고려의 현실적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결과였다. 발해 계승의식은 직접 표방한 일이 없었어도 대신에 발해 통합의식은 상당하였다. 발해 세자 대광현에게 王繼라는 성명을 내리고 宗籍에 실게 하고 발해 왕실의 제사를 받들게 하였던 조치도 대광현을 발해의 계승자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보다 중요한 것은 고려가 발해를 고구려 계승국가로 인식하면서 후삼국 통일과정에 발해 통합의식을 강력히 내비치고 있다는 점이라 할 것이다(이효형, 2007: 380-381).

III. 고려 전기 대외정책과 주변국 포섭

1. 북방 靺鞨州의 설치와 동화정책

고려의 북방정책은 築城과 徙民, 내투인의 수용 및 윤관의 동북 9성 축조로 경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이때 경계와 인접한 여진촌락을 편입하여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고려의 경계로 정착시켰다. 이후 양계 이남의 주민을 이주시켜 경제기반을 조성한 뒤 행정구역으로 편입하는 단계적인 정책을 시행하였다(방동인, 1996). 축성과 군대의 배치로 여진 촌락들은 해당 지역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대신 군사적인 협력과 작위를 받기도 하였다.

고려가 설치한 여진 기미주의 존재가 처음 확인되는 시기는 1038년(정종 4)으로 이미 1033년(덕종 2) 關防 설치와 지속적인 축성으로 기미주의 편제가 본격화되었다. 이것은

18) 『高麗史』 卷2 「世家」2, 태조 17년 7월. “秋七月 渤海國世子大光顯率衆數萬來投, 賜姓名王繼, 附之宗籍. 特授元甫, 守白州, 以奉其祀. 賜僚佐爵, 軍士田宅, 有差.”

고려의 관할권 행사를 통한 적극적인 북방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동여진 蕃賊에 대한 대응과 고려에 협력하던 여진세력을 포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여진정책을 추진했던 것은 분명하다(정병준, 2018, 13-26). 고려의 기미주 설치는 적대 관계의 번적을 분리하고 1차적인 완충지대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이와 같은 고려의 여진 인식은 다음의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동계병마사가 威雞州에 사는 여진인 仇屯과 高刀化 두 명이 都領, 將軍인 開老와 재물로 다투어 開老의 취기가 오르자 살해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시중 徐訥 등이 뜻을 말하길, “여진은 다른 무리지만, 이미 귀화하여 版籍에 이름이 실려 있고, 編氓과 같이 여겨야 하니 우리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제 재물을 놓고 다투다가 우두머리를 죽였으니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법으로 논죄해야 합니다.” 이에 내사시랑 黃周亮이 뜻을 말하길, “이 무리들이 귀화하여 우리의 藩籬가 되었으나, 본래 인면수심이어서 사리를 모르고 관습과 풍속이 교화되지 않았으니 형을 가할 수 없습니다. 또 律文에는 化外人 同類 간의 범죄는 각각 본래 속한 곳의 법을 따른다고 하여 가까운 마을의 늙은 우두머리가 俗法에 따라 죄를 범한 두 집의 재물을 開老의 집에 보냈으니, 어찌 논의가 필요합니까?”, 왕이 周亮 등의 뜻을 따랐다.¹⁹⁾

1038년의 開老 살해사건이 벌어진 威雞州가 동계병마사의 관할지역인 점, 내한한 이들의 출신지역이 동여진인 점에서 1033년(덕종 2)에 동계지역에서 축성된 耀德·靜邊·和州 접경이었을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시중 徐訥은 기미주의 여진인이 고려에 귀화하여 版籍된 상황이니 고려율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黃周亮은 여진인들이 귀화하였지만 풍속이 교화되지 못하여 관습법을²⁰⁾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결국 황주량의 견해를 따라 처리하였지만 이들을 고려의 蕃으로 인식하면서도 고려인과는 다른 대우였다는 점에서 기미주의 여진인의 지위는 모호한 상태였다(정병준, 2018: 26-41).

한편, 장성의 축조는 국경의 확정과 함께 기미주의 편제 등 고려 북방정책의 전환으로 이루어진 축성과 함께 인접 촌락의 편입으로 이어졌다. 1040년(정종 5)에 都兵馬副使 朴成傑이 靜邊鎮에 성을 쌓아 적을 막아야 한다는 보고²¹⁾ 이후 동계에 인접한 북계의 영원

19) 『高麗史』 卷84 「刑法志」 1 殺傷. “靖宗四年五月 東界兵馬使報 威雞州住女眞仇屯高刀化二人 與其都領將軍 開老 爭財 乘開老醉 毆殺之 侍中 徐訥等議曰 女眞 雖是異類 然既歸化 名載版籍 與編氓同 固當遵率邦憲 今因爭財 毆殺其長 罪不可原 請論如法 內史侍郎 黃周亮等議曰 此輩雖歸化 爲我藩籬 然人面獸心 不識事理 不慣風教 不可加刑 且律文云 諸化外人 同類自相犯者 各依本俗法 況其隣里老長 已依本俗法 出犯人二家財物 輸開老家 以贖其罪 何更論斷 王從周亮等議”

20) 『唐律疏議』 卷6 「名例」 48 化外人相犯. “化外人 謂蕃夷之國 別立君長者 各有風俗 制法不同 其有同類自相犯者 須問本國之制 依其俗法斷之 異類相犯者 若高麗之與百濟相犯之類 皆以國家法律論定罪名”

21) 『高麗史』 卷83 「兵志」 2 城堡. “五年 都兵馬副使 朴成傑奏 東路靜邊鎮 蕃賊窺覷之地 請城之 從之”

·平虜鎮과 동계의 장주·정주·元興鎮에도 城과 戍를 설치하는 등 동북면 지역에 집중된 축성이 있었다.

③ “... 세 성이 있는 지역은 본래 적의 소굴로서, 적의 침략을 많이 걱정하여 병마와 군사들을 주요 피해지역에 분산 주둔시켜 수륙양면에서 적의 침입을 막고 있습니다. 축성 당시 출전해서 공을 세운 1科的 攝兵部尙書 高烈 등 10명, 次 1科的 小府監柳喬 등 5명, 2科的 大樂丞 鄭霸 등 5명에게도 포상을 하여 이후에도 모범으로 삼으소서.”²²⁾

④ 동여진 將軍 烏乙達 등 남녀 144명이 좋은 말을 바치며 아뢰길, “저희들은 貴國의 경계에 살며 덕화를 흠모하여 신하로 섬겨온 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추잡한 賊이 침입해 올 것을 걱정하여 정착하지 못했는데, 이제 세 곳에 성을 쌓아 적의 침입로를 막아주는 은혜에 감사하고자 내조했습니다.” 왕이 우대하여 상을 주어 돌려보냈다.²³⁾

⑤ 서여진 亏火 등 156인은 關城을 개척할 때 공로를 세웠으므로 작을 올려 주었다.²⁴⁾

⑥ 서여진 酋長 高之知 등 12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禮賓省에서 高之知 등이 작년 平虜城과 寧遠城을 개척하면서 큰 공을 세웠으니 예물을 넉넉히 주라고 아뢰자 따랐다.²⁵⁾

동북면의 전략요충지를 중심으로 축성이 진행되는 과정에 인접촌락이 편입되었고, 축성 직후 烏乙達 세력이 안정적인 정착에 대한 감사로 土産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유목 촌락의 점진적인 정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이근화, 1987: 15). 또한 여진인들이 내헌할 때마다 공물로 말, 貂鼠皮, 靑鼠皮, 旗幟, 甲冑 등의 주요 토산이었는데, 이것은 고려의

22) 『高麗史』 卷6 世家6 靖宗 10年 11月. “冬十一月 乙亥 兵馬使 金令器奏 今築長定二州及元興鎮城 不日告畢 勞效甚多 其督役州鎮官吏 一科七品以上 超正職一級 父母封爵 八品以下 超正職一級 加次第階職 二科 加正職一級 并階職 且三城之地 元是賊巢 侵擾加慮 兵馬軍事 分屯要害 水陸捍禦 賊不得近 其軍士 一科別將以上 超正職一級 父母封爵 除正以上 超正職一級 并鄉職 軍人超鄉職一級 二科除正以上 及船頭 加正鄉職一級 軍人及梢工水手 加鄉職 且賜物有差 當築城時 出戰有功 一科攝兵部尙書 高烈等十人 次一科少府監 柳喬等五人 二科大樂丞 鄭霸等五人 亦加褒賞 以勸後來 制可”, 『高麗史』 卷82 「兵志」2 城堡. “命金令器·王寵之 城長州 定州 及元興鎮長州城 五百七十五間 戍六所 曰靜北 高嶺 掃兇 掃蕃 壓川 定遠 定州城 八百九間 戍五所 曰防戍 押胡 弘化 大化 安陸 元興鎮城 六百八十三間 戍四所 曰來降 壓虜 海門 道安”

23) 『高麗史』 卷6 「世家」 卷6 靖宗 10年 11月. “癸未 東女眞將軍 烏乙達等男女一百四十四人來 獻駿馬 奏曰 我等在貴國之境 慕化臣服有年矣 每慮醜虜來侵 未獲奠居 今築三城 以防賊路 故來朝謝恩 王優賞遣還”

24) 『高麗史』 卷7 「世家」 卷7 德宗 2年 11月. “以西女眞 亏火等 一百五十六人 開拓 關城時 並有功勞 加爵一級”

25) 『高麗史』 卷6 「世家」 卷6 靖宗 8年 2月. “西女眞 酋長 高之知等 十二人 來 獻土物 禮賓省奏之知等於往年 平虜 寧遠 兩城 拓開之時 頗有勞效 請優賜禮物 從之”

군수품 조달에 유용하였으며 특히 거란과의 전쟁 중에 여진인의 내헌이 집중되었다(노계현, 1989: 65; 정요근, 2012: 73; 최규성, 1981: 160-164).

羈縻州에 거주하며 고려에 귀부한 여진인에 대한 우선적인 동화정책은 編籍이었다. 기미주의 여진에 대한 編籍 사례가 정종 연간의 축성시기와 일치하는 것은 북방경계의 확정과 함께 편적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고려의 번국이었던 우산국의 경우에도 동여진의 침입을 피해 고려의 禮州 주민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적용되었다(전영준, 2012a: 420-421; 2012b: 34-37). 이와 함께 내투한 여진인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양계에 배치하여 군사적인 목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때의 내투인도 기미주 편제방식을 적용하였는데, 촌락의 주장들에게는 편적과 賜爵·賜物²⁶⁾이 일반적으로 시행되었다.

한편, 기미주의 여진인을 활용하여 아직 귀부하지 않은 여진을 초유하는 정책도 확인된다. 化外 여진의 초유에는 강제적인 측면과 자발적인 측면이 혼재되어 있었다. 고려는 거란과 통교했던 세력이나 변경을 침입했던 여진촌락을 化內 여진 酋長들이 합심해서 고려에 귀부시키거나, 거란에 복속된 여진인이 고려의 관작을 받고자 내조한 사례도 확인된다. (이근화, 1988: 102-103) 化外 여진촌락을 포섭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⑦ 동여진의 歸德將軍 仇知羅 등 32명이 같은 족속인 恢八 등 30명을 회유해서 입조했다.²⁷⁾

⑧ 동북로병마사가 女眞의 柔遠將軍 沙伊羅가 물과 물에서 횡행하는 賊首 羅弗 등 494명을 회유하여, 和州館에서 입조를 요청했다고 보고했다. 해당 기관에서 논의하여 “그 무리들은 人面獸心이니 兵馬使에게 지시해서 인원수를 줄이고 차례로 나누어 들여보내십시오.” 라고 하여 따랐다.²⁸⁾

⑨ 동여진 寧塞將軍 冬弗老와 柔遠將軍 沙伊羅 등이 化外 여진 80명을 데리고 입조해 와서 이렇게 알렸다. “化外人들이 그릇되게 짐승처럼 사나운 마음을 품고 邊疆을 어지럽혔으나, 넓은 은혜를 입어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물과 물에 흠어져 사는 蕃長들을 데리고 대궐 앞에서 정성을 보이면서 邊民이 되기를 청하였고, 이제부터 가까운 곳에 있는 도

26) 고려가 하사한 예물은 銀器가 많이 확인되는데, 1102년(숙종 7)에 동여진의 盈歌가 고려에 사신을 보내 銀器匠을 요청하였는데, 고려의 銀製品은 實益과 지위를 인정받는 상징물이었다.

27) 『高麗史』 卷6 世家6, 靖宗 4年 3月. “庚申 東女眞 歸德將軍 仇知羅等 三十二人 誘其屬 恢八等 三十人 來朝”; 恢八은 1103년(肅宗 8)에 동여진 豆門 등 90명이 내조한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高麗史』 卷12 世家12 肅宗 8年 2月. “東女眞 豆門 恢八等 九十人 來朝”

28) 『高麗史』 卷6 世家6 靖宗 9年 4月. “夏四月 戊戌 東北路兵馬使奏 女眞 柔遠將軍 沙伊羅 誘致水陸 賊首 羅弗等 四百九十四人 詣和州館 請朝 有司議奏 此類人面獸心 宜令兵馬使 量減人數 分次赴朝 從之”

적들의 동향을 보고하겠다고 합니다.” 국왕이 가상하게 여겨 특별하게 금색 비단을 하사하고 爵을 올려주었다.²⁹⁾

化內 여진인이 化外 여진을 초유하여 귀부시킨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은 柔遠將軍 沙伊羅가 賊首 羅弗 등 494명을 설득해서 和州館에 데려온 일이다. 沙伊羅³⁰⁾는 1037년(정종 3)에 거란과 통교했다는 죄목으로 서경으로 압송한 인물인데, 이후 석방하여 化外 여진의 포섭과 납치된 고려인의 송환에 협력하도록 회유하였다. 이 과정에서 和州館에 들어온 沙伊羅의 내조 요청에 대해 고려 조정은 蕃賊 출신 여진인 수백 여 명의 도성 출입을 제한하였는데, 적대적인 세력이 대규모로 들어오는 것과 변경 군사시설의 노출을 꺼렸기 때문이었다.

太祖 이후 특정 지역에 군진을 설치하고, 남계 주민을 徙民하여 점유하는 방식의 북진 정책은 영토를 점진적으로 확장하였다. 특히 10~11세기 초 고려는 거란과의 압록강 지역 영토분쟁과 여러 차례의 전쟁으로 국력이 소모되어 동북면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애로가 많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고려에 우호적인 여진 중심의 기미주를 설치하여 군사 방어선으로 삼았으며, 장기적으로는 고려의 동화정책을 시행하여 고려의 영역으로 삼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처럼 고려가 기미주를 설치하고 영향력을 유지한 것은 불안한 북방 정세와 유동적인 북방 경계를 획정하는 것에 있었다. 또, 내투하는 渤海·契丹·女真人을 수용하여 군사 및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북방정책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2. 고려의 탐라 인식과 羈縻支配 강화

탐라사 연구에서 10~12세기는 탐라후기 문화에서 고려의 지방정부로 편입되는 정치 및 사회적 변화를 직접 겪는 중요한 시기였다. 그래서 이 분야의 선행 연구들은 탐라와 고려의 인식이나 정책 등과 같은 양자 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고창석, 1982: 203-222; 진영일, 1996: 163-184 ; 김창현, 1998: 309-345; 김일우, 2004: 179-202; 노명호, 2005: 173-214; 이근우, 2006: 445-466; 전영준, 2010: 213-24

29) 『高麗史』 卷6 世家6 靖宗 9年 9月. “庚辰 東女眞 寧塞將軍 冬弗老 柔遠將軍 沙伊羅等 率化外 女眞 八十人 來朝 奏云 化外人 妄懷狼戾 曾擾邊疆 洎蒙洪育 頓改前非 今引水陸蕃長 詣闕陳款 願爲邊民 自今每侯隣寇 動靜以報 王嘉之 特賜金帛 加等”

30) 沙伊羅는 서경으로 압송된 이후 석방되어 化外 여진 포섭에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납치된 고려인의 송환에도 관여하였다.

3, 2017: 111-140; 김보광, 2018: 261-302; 최희준, 2018: 7-32). 특히 고려는 주변국으로 거란과 東西蕃, 탐라를 염두에 둔 대외정책을 시행하여 북방의 이민족들과는 기미주의 설치나 일리천 전투에 참여한 諸蕃勁騎에 대한 重幣卑辭 전략과 발해 난민의 수용과 정착을 위한 諸정책의 시행을 추진해 왔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아울러 탐라와의 관계 또한 이 시기에 집중되는 바, 대체로 최초의 접촉을 925년(태조 8)에 탐라가 고려에 방물을 바친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³¹⁾ 이를 시작으로 10~12세기까지의 탐라와 고려 접촉 기사를 『고려사』에서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10~12세기 탐라의 고려 진헌 및 관련 기사

| | |
|------------------|---|
| 925년(태조 8) 11월 | 己丑에 탐라에서 方物을 바침. |
| 938년(태조 21) 12월 | 耽羅國 태자 末老가 來朝하자 星主王子의 벼슬을 내려주었다. |
| 1011년(현종 2) 9월 | 乙酉에 탐라가 州郡의 예에 따라 朱記를 하사할 것을 간청하자, 이를 허락함. |
| 1012년(현종 3) 8월 | 壬寅에 탐라인이 와서 大船 2척을 바침. |
| 1019년(현종 10) 9월 | 壬戌에 重陽節(9월 9일)이므로 宋 및 耽羅 黑水 등 여러 나라 사람에게 邸館에서 잔치를 베풀. |
| 1021년(현종 12) 7월 | 丙子에 耽羅가 특산물을 바침. |
| 1022년(현종 13) 2월 | 己酉에 耽羅가 특산물을 바침. |
| 1024년(현종 15) 7월 | 壬子에 耽羅의 추장 周物과 아들 高沒을 함께 雲麾大將軍 上護軍으로 삼았다. |
| 1027년(현종 18) 6월 | 耽羅가 특산물을 바침. |
| 1029년(현종 20) 7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戊午 朔에...耽羅가 특산물을 바침. • 乙酉에 耽羅人 貞一등이 일본으로부터 돌아옴. 처음 정일 등 21명이 항해 중에 바람에 밀리어 동남쪽 끝에 있는 머나먼 섬에 표류하니 섬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온몸에 털이 나고 언어가 다른데 7개월 동안 잡혀 있었다. 정일 등 7명이 가만히 작은 배를 타고 동북쪽으로 일본 那沙府 長岐에 이르렀다가 이에 살아 돌아옴. |
| 1030년(현종 21) 9월 | 辛亥 朔에 탐라가 특산물을 바침. |
| 1034년(靖宗 즉위) 11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庚寅에 神鳳樓에 거동하여 크게 사면하고 中外 群臣들의 賀禮를 받음. 宋의 商客과 東西蕃과 耽羅國이 각각 방물을 바침. • 庚子에 八關會를 설하고 신봉루에 거동하여 百官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저녁에는 法王寺에 행차함. 이튿날 大會에 또한 잔치를 베풀고 觀樂하니 동서 |

31) 『高麗史』 卷1 世家1, 태조 8년 11월. “十一月 己丑 耽羅貢方物.”

| | | |
|------------------|-----|---|
| | | 2京과 동북 兩路의 兵馬使 4都護 8牧이 각각 表를 올려 陳賀하였으며, 송의 商客과 東西蕃과 耽羅國도 또한 方物을 바치며 賚賞을 주어 觀禮케 하니 이후로는 常例로 삼음. |
| 1036년(정종 2) 11월 | | 己丑에 팔관회를 열었는데 宋商 및 東女眞·耽羅가 각각 方물을 바침. |
| 1043년(정종 9) 12월 | | 庚申에 毛羅國 星主 遊擊將軍 加利가 아뢰기를, “王子 豆羅가 요새 졸하였는데 하루라도 後嗣가 없어서는 아니 될 것이오니 청컨대 號仍으로써 王子를 삼으소서.”하고, 아울러 方물을 바침. |
| 1049년(문종 3) 11월 | | 壬寅에 耽羅國의 振威校尉 夫乙仍 등 77인과 北女眞의 首領 夫舉 등 20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침. |
| 1052년(문종 6) 3월 | | 壬申에 三司가 아뢰기를, “耽羅國의 歲貢하는 菓[橘子]의 양을 고쳐 100包로 정하고 길이 定制로 삼으소서.”라고 하니 이를 따름. |
| 1053년(문종 7) 2월 | | 丁丑에 … 耽羅國 王子 殊雲那가 그 아들 陪戎校尉 古物 등을 보내와 牛黃·牛角·牛皮·螺肉·榧子·海藻·龜甲 등 물품을 바치므로 왕은 王子에게 中虎將軍을 除授하고 公服·銀帶·彩段·藥物을 내려줌. |
| 1054년(문종 8) 5월 | | 己卯에 … 耽羅國이 使者를 보내어 太子 冊立을 축하하였으므로 使者 13인에게 職을 더하고 사공과 隨行員에게는 물품을 차등 있게 내려줌. |
| 1055년(문종 9) 2월 | | 戊申. 寒食이므로 송 상인 葉德寵 등 87인은 娛賓館에서, 黃拯 등 105인은 迎賓館에서, 黃助 등 48인은 淸河館에서, 耽羅國 수령 高漢 등 158인은 朝宗館에서 음식을 대접함. |
| 1056년(문종 10) 2월 | | 己酉에 耽羅國이 方물을 바침. |
| 1057년(문종 11) 1월 | | 己丑에 高維를 右拾遺로 삼았다. 중서성에서 아뢰기를, “고유는 탐라 출신이므로 諫省에는 합당하지 않은데, 만일 그 재주를 아깝게 여긴다면 다른 관직을 제수하길 요청합니다.”라고 하자, 이를 받아들임. |
| 1058년(문종 12) 8월 | | 乙巳에 宋의 상인 黃文景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침. 왕이 탐라와 靈巖에서 材木을 베어 큰 배를 만들어 장차 송과 통하고자 하거늘 내사문하성이 上奏하기를, “국가가 北朝(거란)와 우호를 맺어 변방에 급한 警報가 없고 백성은 그 생을 즐기니 이로써 나라를 보전함이 上策이옵니다. 옛적 庚戌년에 거란의 問罪書에 말하기를, ‘東으로 女眞과 결탁하고 西로 宋國에 왕래하니 이것이 무슨 꾀를 쓰고자 함인가?’라고 하였고, 또 尙書 柳參이 使臣으로 갔을 때 東京 留守가 南朝(송)와 通使한 일을 물을 만큼 嫌疑함이 있는 듯하오니, 만약 이런 일이 누설되면 반드시 틀이 생길 것입니다. 또 耽羅는 땅이 척박하고 백성이 빈곤하여 오직 해산물과 배를 타는 것으로서 생계를 도모하는 바, 지난해 가을에 재목을 베어 바다를 거쳐 佛寺를 新創한데 疲勞가 이미 많거늘 지금 또 이 일로써 거듭 괴롭히게 되면 다른 변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
| 1062년 (문종 16) | 2월 | 乙巳에 탐라의 高叶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침. |
| | 10월 | 己卯에 耽羅星主 高逸이 와서 方물을 바침. |
| 1063년(문종 17) 3월 | | 辛亥에 耽羅의 새 星主 豆良이 내조하니, 특별히 明威將軍을 제수함. |
| 1068년(문종 22) 3월 | | 丁卯에 耽羅星主 遊擊將軍 加也仍이 와서 토산물을 바침. |
| 1073년(문종 27) 11월 | | 辛亥에 八關會 열고 신봉루에 거동하여 觀樂함. 다음 날 大會에 大宋, 黑水, 耽羅, 일본 등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각각 禮物과 名馬를 바침. |
| 1077년(문종 31) | | 丁丑 朔에 遼가 檢校太傅 楊祥吉을 보내와 생신을 축하함. 耽羅國이 方물을 |

| | |
|----------------------|--|
| 12월 | 바침. |
| 1079년(문종 33) 11월 | 壬申에 耽羅勾當使 尹應均이 큰 眞珠 두 알을 바쳤는데 빛이 별같이 반짝이니 당시 사람들이 夜明珠라고 말함. |
| 1092년(선종 9) 2월 | 己卯 ...耽羅星主 懿仁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거늘 定遠將軍을 더하고 衣帶를 줌. |
| 1095년(현종 1) 7월 | 癸丑에 毛羅의 高物 등 80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침. |
| 1096년(숙종 1) 9월 | 庚子에 毛羅星主가 사람을 보내와 즉위를 축하함. |
| 1100년(숙종 5) 11월 | 戊寅에 송 商人과 毛羅 女眞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침. |
| 1101년(숙종 6) 11월 | 辛未에 八關會를 열고 범왕사에 행차함. 宋商, 耽羅, 東北蕃酋長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침. |
| 1105년(숙종 10) | 肅宗 10년에 毛羅를 耽羅郡으로 고쳤다. |
| 1153년(의종 7) 11월 | 庚子에 耽羅縣의 徒上 仁勇副尉 中連珍直 등 12인이 와서 방물을 바침. |
| 1168년(의종 22) 11월 | 丁丑에 耽羅安撫使 趙冬曦가 入覲하였다. 耽羅는 險遠하여 攻戰이 미치지 못하는 바이며, 토지가 기름져서 經費가 나오는 곳이다. 이보다 앞서 貢賦가 번거롭지 않고 백성들이 生業을 즐길 수 있었는데, 근자에 官吏들이 不法하므로 賊首 良守 등이 謀叛하여 守宰를 축출하였다. 왕이 조동희에게 명하여 符節을 가지고 가서 宣諭하도록 하였더니, 적들이 스스로 항복한 지라 良守 등 2인 및 그 黨 5인을 베고, 그 나머지는 모두 곡식과 布帛을 주어서 慰撫함. |
| 1186년(명종 16) 7월 | 갑신에 어떤 사람이 耽羅에 반란이 일어났다고 보고하였다. 왕이 깜짝 놀라서 兩府를 불러서 대처할 방안을 묻고는 곧 閤門祗候 獨孤忠과 郎將 池資深을 안무사로 임명하여 파견하고, 식목녹사 張允文을 大府注簿 行耽羅縣令으로 임명하여, 각각 능건 7단씩을 주어 길을 떠나라고 재촉하였다.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종전의 현령과 현위에게 둘 다 증벌을 내렸는데, 조금 뒤에 들어보니 반란의 꾀새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조서로 내린 명령이 이미 내려졌으므로 장운문은 그대로 부임하게 하고 종전의 현령과 현위는 결국 파면되었다. |
| 1197년(신종 즉위년) 11월 | 경자 초하루에 왕이 儀鳳樓에 거둥하여 詔書를 내려 이르기를, "... 이 달 초하루 먼동 트기 전을 기준으로, 전국의 참형과 교형 이하부터 贖銅과 徵瓦에 해당하는 죄에 이르기까지 모두 사면하여 면제하노라. 국내의 명산대천과 耽羅의 신령들에게 각각 尊號를 덧붙여주고, 조상들과 역대 名王들에게 시호[尊諡]를 높여주도록 한다..."라고 하였다. |

그런데 고려와 탐라의 관계 설정은 이미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질서에서 논의되고 있어서 북방 이민족에 대한 관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동북아시아 사회의 전통적인 국제질서는 朝貢과 冊封體制로 설명되고 있는데, 唐代 이후부터 약화되기는 하였으나 책봉체제는 여전히 동아시아 사회에서 일정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이는 원래 周代 봉건제도에서 유래된 것으로 한족 특유의 중벌제도와 관련하여 主家와 分家の 관계에서 출발하였고, 이것이 주대 봉건제도하에서 황제국과 제후국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대외적으로 고려의 위상을 세우고자 하였으며, 이의 대가로 사신들과 상인들에게 하사품 형식의 답례가 있었다.³³⁾ 외국 사신의 조하의식은 팔관회가 대외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었음을 반증한다. 고려는 이 의식을 통하여 국제관계에 대한 고려 나름대로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있었다(안지원, 2005: 213). 팔관회에서 외국인 조하의식이 상례가 된 것은 1034년(정종 즉위년) 11월 팔관회부터이다. 이때 송의 商客과 東西蕃, 耽羅에서 방물을 헌납하였고, 정종이 그들에게 특별히 음악을 관람할 수 있는 좌석을 배정하였는데 그 후부터 이것이 전례가 되었다.³⁴⁾

동서번은 女眞으로 탐라와 함께 태조 대부터 고려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다.³⁵⁾ 고려는 현종 때에 거란의 침입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후 외교적으로 국제관계에 있어 자신감을 드러냈다. 거란과 송에 대하여 조공관계를 유지하기는 하였으나 형식적이었고, 도리어 동·서 여진과 탐라, 鐵利國,³⁶⁾ 弗奈國³⁷⁾ 등으로부터 조공을 받고 있었으며, 송과 아라비아의 大食國³⁸⁾ 상인들도 토산물을 바치고 있었다.

팔관회에 참여하기 이전인 1011년(현종 2) 9월에 탐라가 州郡의 예에 따라 朱記를 하사해 주기를 요청하자 고려가 허락한 사실이 눈에 띈다. 이것은 탐라가 고려의 내정간섭을 수용하겠다는 의사였기 때문이다(김창현, 1998: 311-315). 이에 따라 탐라에 대한 고려의 영향력은 강화되어 갔지만,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여 고려의 군현으로 편입되지는 않았으며 그 대신 勾當使가 파견되었다.³⁹⁾ 탐라가 1105년(숙종 10)에 郡으로 개편되기 이전에는 구당사가 파견되었음에도 고려의 지방이 아니라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김창현, 1998: 318).

<표 2>의 기사를 보면 탐라는 외국으로 취급되어 송상, 여진, 일본 등과 함께 고려의

33) 『高麗史』 권69 志23 禮11. “嘉禮雜儀 仲冬八關會儀.”

34) 『高麗史』 권6 世家6 靖宗 즉위년 11월 경자. 『고려사』 권69 志23 禮11 “嘉禮雜儀 仲冬八關會儀.”

35) 『高麗史』 권4 世家4 현종 11년 2월.

36) 鐵利(鐵勒)는 발해의 지배를 받던 말갈의 한 부족이다. 1014년(현종 5)부터 고려에 조공하였고, 1021년(현종 12)에는 귀부를 청하는 표문을 바치기도 하였다(최규성, 1995: 266-267).

37) 『高麗史』 권4 世家4 현종 9년 6월 乙亥.

38) 1024년(현종 15)으로 대식국 상인 悅羅慈 등 100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친 일이 최초의 기록이다(『고려사』 권5 世家5 顯宗 15년 9월). 大食은 북아라비아 부족인 Tayyi를 페르시아가 Taji-Tajik로 부른 것을 중국인이 음역한 데서 유래하였다(김정위, 1977: 47). 한편 고려 시기의 대식은 압바시아朝(750~1258)를 지칭한다. 현재의 이란, 이라크, 아라비아 반도, 아프리카 북부에 걸쳤다(김철웅, 2006: 130).

39) 『高麗史』 권9 世家9, 문종 27년 6월 6일. “東北面兵馬使奏, ‘三山·大蘭·支榰等九村, 及所乙浦村蕃長鹽漢, 小支榰前里蕃長阿反伊, 大支榰與羅其那烏安撫夷州骨阿伊蕃長所隱豆等一千二百三十八戶來, 請附藉. 自大支榰, 至小支榰裏應浦海邊長城, 凡七百里, 今諸蕃, 絡繹歸順, 不可遮設關防. 宜令有司, 奏定州號, 且賜朱記.’ 從之.”; 『高麗史』 권9 世家9, 문종 33년 11월. “壬申 耽羅勾當使尹應均獻大眞珠二枚, 光曜如星, 時人謂夜明珠.”

중요한 행사 때 방물을 바쳐 축하하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1034년 팔관회(靖宗 즉위년), 1053년(문종 7)에 탐라국 왕자가 아들을 보내 바친 물품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었다는 사실, 1073년(문종 27년) 9월 팔관회 때 大宋, 黑水, 耽羅, 日本 등 諸國人이 각기 예물과 명마를 바친 일, 1092년(선종 9)에도 성주가 토물을 바치자 의대를 하사한 일과 같이 진헌품에 대한 回賜品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볼 때 탐라와 고려는 조공과 책봉의 관계로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진영일, 1996: 177-178).⁴⁰⁾

특히 1052년(문종 6)년의 기사에서 탐라국의 歲貢量을 정하였던 것은 고려가 탐라의 물산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팔관회의 참여가 蕃國의 지위 유지와 직접 관련되었지만 1168년 양수의 난을 진압한 耽羅安撫使 趙冬曦가 보고를 올릴 때까지 30여 회에 이르는 진헌이나 토공이 이루어지고, 지속적으로 탐라 지배층의 입조는 탐라의 고려 군현 편제에 빌미를 제공하였을 것이다(전영준, 2017, 128). 이것은 고려의 과거제에서 외국인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賓貢科를 설치하여 탐라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 탐라인이 과거에 처음 합격한 기록은 977년(경종 2) 진사시 갑과에 高凝 등 3인과 을과 3인이었다. 1057년(문종 11)에는 高維를 右拾遺로 임명했던 일과, 그의 아들 高兆基가 1107년(예종 2)에 문과에 급제하여 1135년(인종 13) 김부식의 보좌관으로 활약하였고, 의종 때는 參知政事判兵部事와 中書侍郎平章事를 역임하였다(김봉옥, 2013: 45-46).

이처럼 탐라인의 고려 입조에서부터 지방 정부로 편입까지 중앙과의 관계 유지는 고려가 탐라의 사정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였다. 탐라의 유력자가 고려의 지방 편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르는 조치가 취해졌을 가능성도 높다. 이것은 결국 탐라민의 지속적인 고려 입조에서 양수의 난까지의 기간이 짧다는 것도 중앙 정부와 탐라 토호세력 간의 정치적 조율을 통한 관계가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전영준, 2017: 129).

탐라의 지배자가 독자적으로 방물을 바치는 기사는 1153년(의종 7)에 徒上 仁勇副尉 中連珍直 등이 방물을 바친 예를 제외하면 1105년(숙종 10)⁴¹⁾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때부터 탐라는 고려의 지방으로 편입되어 歲貢을 납부하였고, 이로 인한 경제적 폐해와 사회적 혼란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김보광, 2018, 292-294). 이후 1168년(의종 22)에 耽羅安撫使 趙冬曦가 파견되어 良守의 난을 진압하면서부터는(전영준, 2017) 탐라

40) 진영일은 고려가 탐라국이라 호칭한 점, 탐라의 星主를 지방 향리가 아니라 ‘國主’처럼 대한 집에 주목하여 탐라가 독립 국가였음을 강조하였다.

41) 『高麗史』 卷57, 地理 2, 全羅道, 珍島縣 耽羅縣. “肅宗十年, 改毛羅, 爲耽羅郡.”

는 半독립국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또, 1202년(신종 5) 10월에 탐라에서 煩石과 煩守의 난이 일어나자 안무사의 파견으로 진압되었지만, 탐라의 저항운동은 중앙정부로 하여금 탐라정책의 再考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1220년(고종 7) 3월에 탐라 현을 탐라군으로 회복시키고 지방정부로 격상하는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濟州라는 공식 명칭이 1229년(고종 16) 2월에 보인다는 점⁴²⁾에서 1220년과 1229년 사이에 탐라를 제주로 격상시키고 고려의 지방으로 완전하게 편제함으로써 중앙에서 이탈하는 분리운동의 여지를 없애려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고려는 건국 직후부터 북방의 蕃國과 탐라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미주의 설치와 기미지배 방식의 운용으로 주변국들의 동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IV. 맺음말

동북아시아의 국가들이 추구했던 종주국 천하관은 고려의 정치적·대외적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고려는 후삼국 통일 후 줄어든 인구를 확충하고 국가의 면모를 일신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외부적으로는 기미주의 설치와 운용을 통한 이민족의 내투나 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또 주변국에 대한 고려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팔관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기미지배 방식을 투영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925년부터 시작된 발해난민의 수용은 934년 발해의 세자 대광현의 망명으로 정점을 이루었다. 아울러 동-서여진인의 수용을 위한 기미주의 설치와 국경의 수비를 강화하면서도 영역의 확장을 피하는 정책이었다. 특히 변국의 내투를 유도하기 위한 무산계의 작위를 내리거나 賜姓名이나 직첩의 수여는 수많은 변국인의 내투를 가져왔다. 그리고 고려의 영역으로 받아들인 이들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처우 개선은 고려인의 정체성을 각인시키는 장치가 아니었을까 한다. 또 戶籍 編成을 통한 이민족 同化政策은 고려의 편호제도를 적극 활용하였고, 투화한 이들의 능력을 파악한 후 전시과 내에 편제하기도 하였다.

한편, 고려와 탐라는 동북아시아의 질서로 알려진 조공-책봉의 관계로 설정되어 상당 기간 존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925년에 발해유민의 망명이 시작될 때 탐라는 고려 태조에게 방물을 바치면서 외교관계가 형성되었다. 백제 멸망 이후 고려의 영향력 내에 포함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현실에서 탐라의 고려 접촉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42) 『高麗史』 卷22 世家22, 고종 16년 2월 26일. “乙丑 宋商都綱金仁美等二人, 偕濟州飄風民梁用才等二十八入來.”

다. 여기에 고려 또한 북방 이민족의 내투를 강화하고자 하였던 기미주의 운용을 적용하여 탐라국에 대해서도 蕃土의 개념을 적용한 기미지배를 강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탐라는 팔관회 참가 때 방물 진헌을 비롯하여 부정기적인 세공을 제공함으로써 정체성과 자주권을 보장받았으며, 고려는 10~12세기까지 탐라를 외국으로 인식하여 진헌품에 대한 회시품의 절차를 통하여 탐라를 고려의 정치적 영향권 내에 두고자 하였다.

의종 때의 마지막 방물 진헌 기록을 끝으로 탐라 내의 정치적 역학관계와 고려 정부로부터 받은 차별로 민란이 자주 발생하자 고려는 탐라에 대한 정책을 수정하기에 이르렀다. 12세기 초 설정된 縣에서 郡 및 州로 승격시킴으로써 분리운동을 통한 독립의 의지를 상쇄시키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고려는 건국 직후부터 북방의 여러 민족에 대한 기미주 설치와 운용 및 탐라에 대한 기미지배를 통하여 주변국들의 동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참고문헌

1. 史料

『高麗史』

『高麗史節要』

『益齋亂藁』

「沃溝郡大夫人濟州高氏墓誌銘並序」

2. 論著

고창석, 1982, 「耽羅의 郡縣設置에 대한 考察-고려전기를 중심으로-」, 『제주대 논문집』 14, 제주대학교, 203-222.

김재명, 1996, 「高麗時代 役의 收取와 戶等制」, 『靑溪史學』 1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3-40.

김정위, 1977, 「中世 中東文獻에 비친 韓國像」, 『한국사연구』 16, 한국사연구회, 29-50.

김철용, 2006, 「고려와 大食의 교역과 교류」, 『문화사학』 25, 한국문화사학회, 129-145.

김명진, 2014, 『고려 태조 왕건의 통일전쟁 연구』, 해안.

김보광, 2018, 「고려전기 탐라에 대한 지배방식과 인식의 변화」, 『역사와 담론』 85, 호서사학회.

김봉옥, 2013, 『제주통사』, 제주발전연구원.

김일권 외, 2019, 『중세 동아시아의 해양과 교류』, 경인문화사.

김일우, 2004, 「고려와 탐라의 관계 형성과 그 형태」, 『한국학보』 30(2), 일지사, 179-202.

김진선, 2020, 「한국 사회에서의 난민 인식의 문제」, 『탐라문화』 65, 탐라문화연구원, 7-37.

김창현, 1998, 「高麗의 耽羅에 대한 정책과 탐라의 동향」, 『한국사학보』 5, 고려사학회, 309-345.

김지완, 2020, 「난민의 출현과 대응에 대한 철학의 문제들」, 『탐라문화』 65, 탐라문화연구원, 39-74.

남인국, 1986, 「高麗前期의 投化人과 그 同化政策」, 『歷史教育論集』 8, 역사교육학회, 83-111.

노계현, 1989, 「高麗文宗의 對宋外交再開와 多邊外交展開」, 『國際法學會論叢』 34-2, 大韓國際法學會, 47-66.

노명호, 1997, 「동명왕편과 이규보의 다원적 천하관」, 『진단학보』 83, 진단학회, 293-315.

_____, 2005, 「10~12세기 탐라와 고려 국가」, 『제주도연구』 28, 제주학회, 173-214.

박옥걸, 1996, 『高麗時代의 歸化人 研究』, 國學資料院.

_____, 2004, 「고려시대 귀화인의 역할과 영향」, 『白山學報』 70호, 백산학회, 359-388.

박용운, 1996, 『고려시대 개경 연구』, 일지사.

방동인, 1996, 「高麗의 成長과 北方築城」, 『백산학보』 47, 백산학회.

안지원, 2005, 『고려의 국가 불교의례와 문화』, 서울대출판부.

이근우, 2006, 「탐라국 역사 소고」, 『부대사학』 30, 효원사학회, 445-466.

- 이근화, 1987, 「高麗前期의 北方築城」, 『역사와 담론』 15, 호서사학회, 1-20.
- _____, 1988, 「高麗前期 女眞招諭政策」, 『백산학보』 35, 백산학회.
- 이재범, 2003, 「고려 태조의 대외정책-발해유민 포섭과 관련하여」, 『백산학보』 67, 백산학회, 711-734.
- 이중명, 1968, 「高麗에 來投한 渤海人考」, 『白山學報』 4, 백산학회, 199-256.
- 이진한, 2015, 「고려시대 외국인의 居留와 投化」, 『한국중세사연구』 42, 한국중세사학회, 137-175.
- 이효형, 2007, 『발해 유민사 연구』, 혜안.
- 임상선, 1999, 『발해의 지배세력 연구』, 신서원.
- 장동익, 2015, 「高麗時代に 이루어졌던 對外政策의 諸類型」, 『한국중세사연구』 42, 한국중세사학회, 47-98.
- 장창은, 2020, 「삼국시대 ‘難民’의 발생 배경과 동향」, 『한국고대사탐구』 36, 한국고대사탐구학회, 11-72.
- 전영준, 2010, 「고려시대 팔관회의 실행과 국제문화교류」, 『다문화콘텐츠연구』 3(통권 8), 중앙대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13-243.
- _____, 2012a, 「고려시대 異民族의 귀화 유형과 諸정책」, 『다문화콘텐츠연구』 13,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407-434.
- _____, 2012b, 「高麗時代 ‘編戶’의 行刑體系 적용과 사회적 활용」, 『인문과학』 13,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7-47.
- _____, 2012c, 「동아시아의 문화교류와 재현 양상-고려시대를 중심으로」, 『역사와 교육』 14, 역사와 교육학회, 19-51.
- _____, 2017, 「고려의 탐라 수탈과 良守의 난」, 『역사와 교육』 25, 역사교과서연구소, 111-140.
- _____, 2019, 「고려시대 동아시아의 해양과 국제교류 양상」,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편저, 『중세 동아시아의 해양과 교류』, 경인문화사, 75-112.
- 정병준, 2018, 「唐代 異民族 管理方式의 다양성 및 그 변용-靺鞨府州 체도를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143, 동양사학회, 1-48.
- 정병준 외, 2011, 『중국의 발해 대외관계사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정요근, 2012, 「11세기 동여진 해적의 실체와 그 침략 추이」, 『歷史研究』 107, 한국사학회, 45-88.
- 진영일, 1996, 「高麗前期 耽羅國 研究」, 『탐라문화』 16, 탐라문화연구원, 163-184.
- 최규성, 1981, 「高麗初期의 女眞關係와 北方政策」, 『동국사학』 15·16, 동국사학회, 149-168.
- _____, 1995, 「대외관계」, 『한국사』 15, 국사편찬위원회, 225-274.
- 최희준, 2018, 「탐라국의 대외교섭과 항로」, 『탐라문화』 58, 탐라문화연구원, 7-32.
- 추명엽, 2002, 「고려전기 ‘번(蕃)’ 인식과 동·서번의 형성」, 『역사와 현실』, 한국역사연구회, 14-46.

_____, 2018, 「고려의 다원적 종족 구성과 ‘我國·我東方’ 의식의 추이」, 『역사와 경계』 109, 부산경남사학회, 109-145.

한규철, 1986, 「後三國時代 高麗와 契丹關係」, 『富山史叢』 1.

한향도, 2014, 「11세기 고려-여진관계와 귀화정책」,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Abstract

A Study on Korea's Accommodation of the Refugees from the Collapsed Kingdom of Balhae and Policy of Assimilating the Neighboring Nations in 10th~12th Centuries

Jeon, Young-Joon*

Having faced with the political instability of Northeast Asia since its foundation, Goryeo implemented policies for the incorporation of neighboring peoples. At the time of the establishment of Goryeo, the internal confusion of neighboring countries surrounding Goryeo and the rise of the newly emerging northern peoples acted as the direct causes of the fall of Balhae.

The turbulent political condition in Northeast Asia around the 10th century was an immediate challenge that required Goryeo to establish deliberate internal and external policies. Therefore, Goryeo attempted to actively accept foreign peoples from northern regions to expand human resources necessary to wage conquest wars while setting up policies to strengthen the centralized power for internal stability.

Goryeo also actively induced the voluntary surrender of northern peoples with the establishment of loose-reign provinces, raising its external reputation by using the system to promote the stability of royal authority and the Palgwanhoe (Assembly of the Eight Commandments). In addition, Goryeo formulated a policy to reinforce its political influence on Usan and Tamna. In particular, for Tamna, it adopted and actively implemented the loose-reign control system that utilized the traditional Northeast Asian tributary relationships.

Goryeo's various assimilation policies for refugees and foreign nations were unfolded in the process of accepting crown prince Daegwanghyeon and people from Balhae and northern foreign peoples including the Jurchen during its early years. In addition, the kingdom expanded its influence in Northeast Asia, with the loose-reign control of Tamna and incorporation of local governments.

Political incentives such as the granting of names and public offices to foreign peoples

* 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

who continued to voluntarily surrender to Goryeo throughout the entire Goryeo period and systems for improving their socio-economic status such as the provision of family registers and tuhwajeon (land) helped them establish their identity as the Goryeo people and be assimilated into the Goryeo society. In addition, it is considered that Goryeo's active assimilation policy toward foreign peoples greatly contributed to raising the status of the country in Northeast Asia.

Key Words : Refugees, Balhae refugees, loose-reign provinces, Tamna, loose-reign control, assimilation policy

교신 : 전영준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E-mail: in-history@hanmail.net)

논문투고일 : 2021. 01. 31

심사완료일 : 2021. 02. 09

게재확정일 : 2021. 02. 09